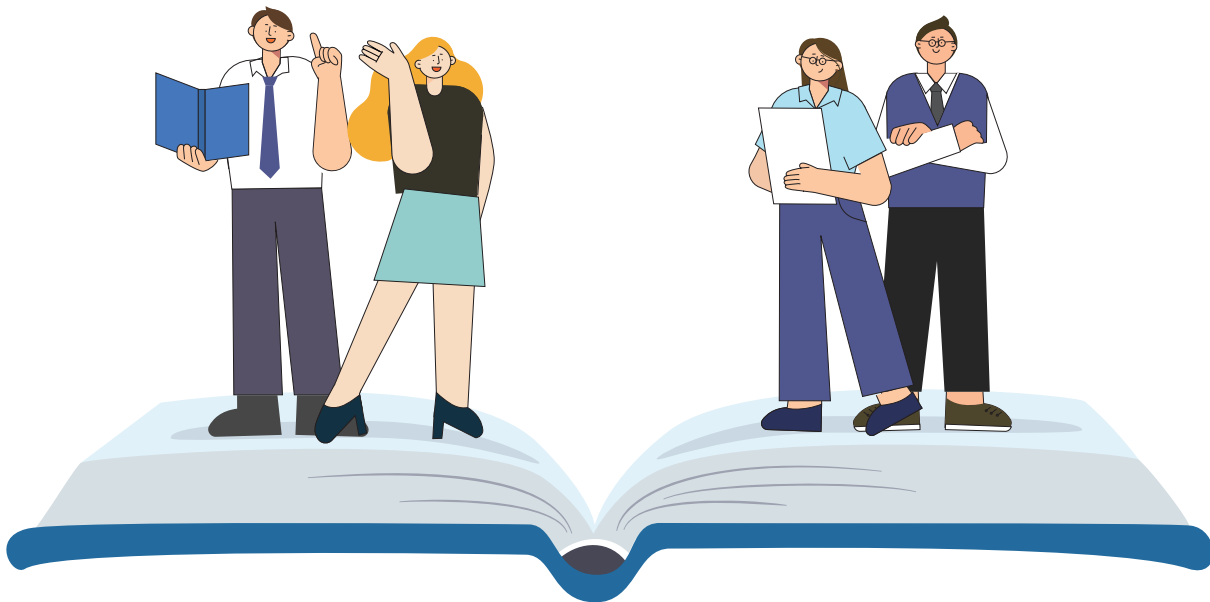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100113-14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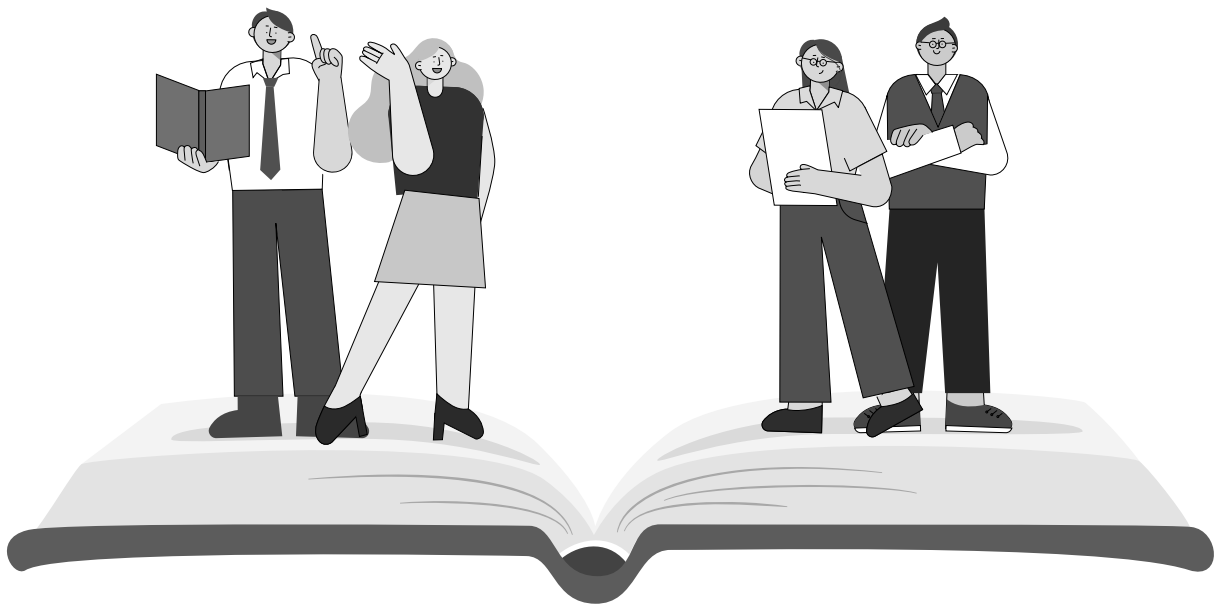
교육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100113-14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

2025



교육부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은 효율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 관련 기준 및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목 차 Contents

I.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1.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3
2. 보육교직원 자격기준과 자격종별	8
3.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업무처리	9
4. 보육교직원 자격증(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16
II.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기준	23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25
가. 현행 「영유아보육법」(‘14. 3. 1.시행)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25
나.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46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8.7.이전)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58
2.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65
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6. 8. 1.시행)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65
나.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77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8.7.이전)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83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95
III. 질문과 답변	99

부 록

1. 보육교직원 자격 제도 관련 법령	115
2.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세부 지침	138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의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138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여성가족부 2006. 5. 30.)	142
- 보육교사 3급 제출서류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2011. 5. 25.)	147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 기준 안내	150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2014.3.1. 시행)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152
-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2016.8.1. 시행)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등	154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2014.3.1.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157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사항	158
3. 자격증 신청 관련 서식	160

Chapter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2. 보육교직원 자격기준과 자격종별
3.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업무처리
4. 보육교직원 자격증(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Part

I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인정 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을 인정하여 왔음
- 또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온 바, 복잡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 주체의 부재로 시군구청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국가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게 되었음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도입

-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부칙(제7153호, 2004. 1. 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5. 1. 30. 이후부터 시행됨

■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도입

- 2005. 12.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 되었고, 법 부칙(제7785호, 2005. 12. 29.) ①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6. 12. 30. 이후부터 시행됨

■ 국가자격증 제도의 의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또한, 보육교사도 보육아동을 위하여 보호, 교육 및 가족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 도입 배경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특수교사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 왔음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2011. 8. 4.), 시행(2012. 8. 5.) 되면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정(2012.8.3.),시행(2012.8.5.)으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시되었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는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 배치시기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 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 특수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을)을 소지한 사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이에, 2016. 3. 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순차적인 배치를 앞두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5. 7. 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게 됨

자격확인서 제도의 의의

- 2015.7.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4], [별표5]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자격증의 교부

관련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관련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령 자료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관련조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

관련조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제11009호, 2011.8.4.>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 <교육부령 제346호, 2024. 11. 26.>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조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5-14호, 2025.5.26.)

2. 보육교직원 자격기준과 자격종별

가.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관련 법률

- 어린이집 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나. 보육교직원 자격종별

법적 근거		구분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어린이집 원장(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40인 미만*)
	제2항	보육교사(1·2·3급)

*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종전 「영유아보육법」 '05. 1. 29. 이전 규정에 따른 자격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

3.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업무처리

가. 자격검정 및 자격증(확인서) 수여권자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교육부 장관
 -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한국보육진흥원장
 - ☞ 관련 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5-14호, 2025.5.26.)

나. 자격검정 및 자격증(확인서) 교부 기관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방법
 - 무시험 검정
 -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부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확인서)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¹⁾에서 수행
 -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5-14호, 2025.5.26.)

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 자격검정 일반원칙
 - 무시험을 원칙으로 함.
 - ☞ 자격검정 및 자격증(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는 자격 신청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1)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 ☞ 2005. 1. 30. ~ 2014. 2.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는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함
-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제7153호)에 따라 2005. 1. 29.이전까지의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자격 신청 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법률 제20380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신설('24.3.19. 개정, '24.9.20.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 자격 취득 제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적용대상
- 부칙 제2조<법률 제20380호>에 따라 이 법 시행('24.9.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어린이집 원장(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40인 미만)
- 보육교사(1·2·3급)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후 재교부 신청자

※ '24.9.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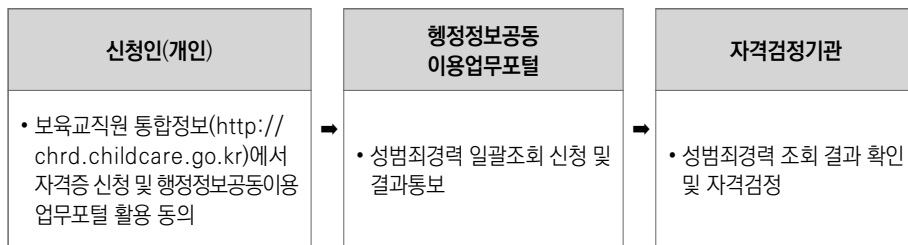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절차

- 성범죄이력 확인

성범죄경력 확인 절차(일괄 조회, 개인별 제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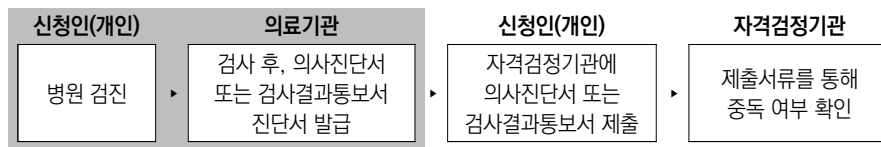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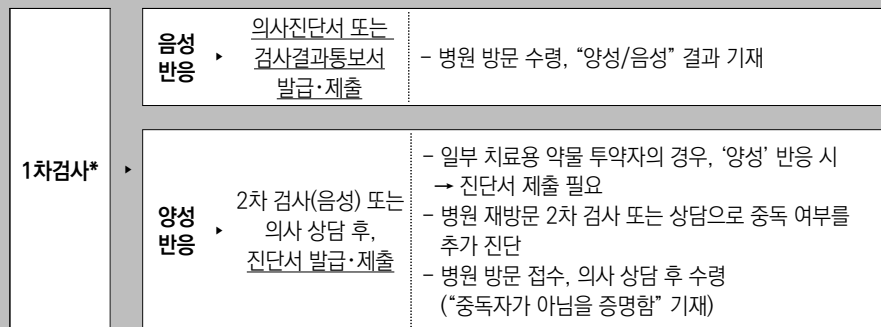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자격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증(확인서) 교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모든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 경과 후 자격증을 재발급

-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05. 1. 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 보육교사 자격증

-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예: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보육교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 발급 불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 기간 경과 후 자격증 재교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확인서) 교부 양식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자격증 교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교부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서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 세/부자격종류(자격인정일자)	사진 3cm×4cm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서식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 - - 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사진
3cm×4cm

위 사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 받음

한국보육진흥원장

- 신청

- ## ● 발급절차

- | | | |
|----------------------------|--|-----|
| 회원가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 개인
자격증
신청 | 자격증신청서 작성
(인사기록카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정보, 경력, 학력, 보수교육, 교육훈련 정보 작성 및 등록 • 자격증 제작을 위한 증명사진(3*4) 파일 등록 | 신청인 |
| | 자격종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종류 선택 • 학력 등 기본정보 확인 및 자격증 배송지 주소 등록 | |
| | 수수료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완료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 |
| 서류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별 제출서류 확인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 |
| 결격사유 확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경력 확인(행정정보공공이용을 통한 일괄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개인별 서류 제출) | |
| 자격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처리기간)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진흥원 |
| 자격증
(자격확인서)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우편발송
(신청 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 | |

15

4. 보육교직원 자격증(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24.9.20.전 '인터넷신청완료'자는 [마약류 중독 여부] 제출 서류 제외
- 성범죄 경력 확인: 자격증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후 자격검정기관에서 일괄 조회

자격종류	자격기준	제출서류
일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유치원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유치원 1급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③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초등학교 2급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자격종류	자격기준		제출서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있는 사람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사람		①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③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가정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에 있는 사람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영아 전담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 간호업무 경력에 있는 사람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세기술 요함)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장애아 전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졸업증명서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에 있는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경력증명서(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⑤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상기 구비(제출)서류 외에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격검정기관의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종전 법에 의한 원장 자격을 갖춘 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시기별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기준 참고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제출 불필요
(보육교사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24.9.20.전 '인터넷신청완료'자는 [마약류 중독 여부] 제출 서류 제외
- 성범죄 경력 확인: 자격증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후 자격검정기관에서 일괄 조회

자격급수	자격기준	제출서류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관련 석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③ 경력증명서(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 보육관련 대학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제외 ④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⑤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④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명서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④ 보육실습확인서 ⑤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상기 구비(제출)서류 외에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격검정기관의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시기별 보육교사 자격검정기준 참고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보육교사 자격증 사본)는 제출 불필요

공통 제출서류

- ①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②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③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 ④ 성적증명서 원본
 -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 ※ 상기 구비(제출)서류 외에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격검정기관의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자격증(확인서)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사유	제출서류	
	공통	재교부 사유별 제출서류
분실	①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②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훼손		① 훼손된 자격증(확인서)
성명 변경		① 성명변경 이전 자격증(확인서)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자격증(확인서)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자격인정시점 변경		①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 ②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

● 자격취소 후 재교부를 위한 제출서류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 사유		제출서류	
		공통	자격취소 사유별 제출서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①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②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1부	① 신규 자격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일체
	제2호		①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 ②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 하는 서류 ※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 받아 자격취 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제3호		①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①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 ②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 하는 서류 ※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아 자격취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 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제8호		

※ 상기 구비(제출)서류 외에 재교부를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격검정기관의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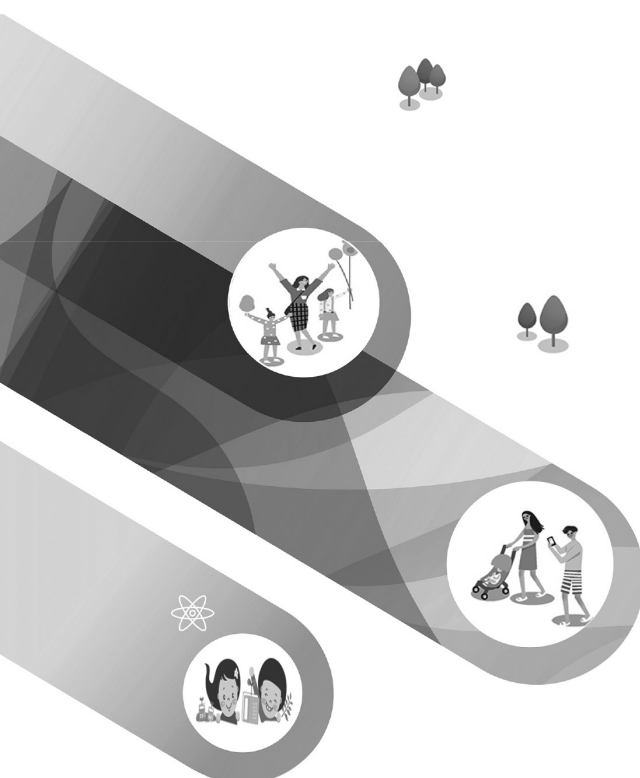


Chapter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기준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2.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Part
II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기준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가. 현행 「영유아보육법」(‘14. 3. 1.시행)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 2014. 3.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시행으로 2014. 3. 1.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 2005. 1. 30. ~ 2014. 2.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은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함
 - 변경 전 기준(2005. 1. 30. ~ 2014. 2. 28.이전)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2014. 2. 28. 까지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제7153호. 2004.1.29.>에 따라 2005. 1. 29.이전까지의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05. 1. 29. 이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자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 ※ '마'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으로 별도 발급 됨.
(자격종류 란에 기재된 어린이집(교육훈련시설이 위탁(부설)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원장으로 근무 가능)

경력인정 범위 및 판단기준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단, 공립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장 발행 경력증명서 인정)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 참고
- 경력증명 서류: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이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란 시설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 경력증명 서류: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 특수교육분야의 전문인력: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경력증명서류: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센터장 발행 경력증명서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유치원 과정 명시)
- ※ 단, 공립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장 발행 경력증명서 인정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폐지된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7120호)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 및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다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위 가 ~ 사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
 - 위 가 ~ 마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정책수행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관장(기관장 사무 보좌직 포함) 등 기관 운영 관련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 서류
 - 공무원 직급 및 업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업무분장 관련 공문, 기관장 및 인사 담당부서 등을 통해 발급된 경력확인서 등)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교육부 고시 2024-15호 (2024.6.27.) 발령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포함되는 한국보육진흥원 근무 경력을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정함
(경력기간 인정의 적용례)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무를 한 기간을 합산

●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아동간호업무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
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아동간호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병원: 병원장 발행 경력증명서 • 보건소: 보건소장 발행 경력증명서 • 초등학교: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및 담당 업무의 성격이 아동간호업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세부적으로 상세기술 요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 ◆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주 40시간 미만), 경력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관리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내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사 및 조리원 경력산출 방법’ 적용하여 인정

■ 세부 항목별 자격검정 기준

〈유의사항〉

- 변경 전 기준(2005. 1. 30. ~ 2014. 2. 28.이전)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2014. 2. 28.까지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됨
-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됨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포함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필요
 - ※ 보육교사 1급 취득 전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함.
- 법 적용 기준
 - 변경 전 기준(2005. 1. 30. ~ 2014. 2. 28.이전) 적용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2014. 2. 28.까지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경우 변경 전 기준 적용
 - 2014. 2. 28.까지 변경 전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 적용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증명서류 일체)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유아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필요

※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 취득 전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함.

● 법 적용 기준

- 변경 전 기준(2005. 1. 30. ~ 2014. 2. 28. 이전)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 후 2014. 2. 28.까지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경우 변경 전 기준 적용
- 2014. 2. 28.까지 변경 전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 적용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 (재직 당시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유치원 원장 자격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양호교사 1급·2급) 및 영양교사 (1급·2급) 등은 제외
- 경력 인정 기준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필요
 - ※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 취득 전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및 3급,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필요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전 경력은 산입하지 않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필요
 - 간호사 면허 취득일은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아동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경력 인정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필요

※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범위 중 가목부터 사목에 명시된 시설과 관련한 행정업무 경력 및 정책수행 등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말하며, 기관장 등(기관장 사무 보좌직 포함)기관 운영 관련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불인정

※ 보육 등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업무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상세 업무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업무분장 관련 공문, 인사담당부서의 상세 경력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7급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7급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7급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 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 등 아동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②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40인 미만 시설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필요
 - ※ 보육교사 1급 취득 전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함.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법 적용 기준
 - 변경 전 기준(2005. 1. 30. ~ 2014. 2. 28. 이전) 적용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2014. 2. 28.까지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경우 변경 전 기준 적용
 - 2014. 2. 28.까지 변경 전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 적용
 - ※ 2005. 1. 29. 이전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자에게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증명서류 일체)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 증명 서류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③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 필요
 - 간호사 면허 취득일은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법 적용 기준
 - 간호사 면허 취득자로서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별도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 생략)
 - 일반기준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아동간호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 ※ 아동간호업무란 병원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④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은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대학(교)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사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전공한 사람이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사람을 말함

●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학 과 명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특수심리치료학과	재활보건학전공	유아특수재활과
운동처방 및 재활전공	아동심리치료학과	직업재활학전공	치료특수교육과
재활공학협동과정	아동상담치료학과	재활선교전공	장애인복지학과
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재활전공	언어치료학과
재활공학과	놀이치료학과	재활복지학전공	임상언어치료
재활심리학과	작업치료과	인간재활학전공	언어청각교정
재활과학학과	유아특수치료교육과	특수재활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직업재활학과	특수교육전공	재활복지과	언어교정과
재활과학과	특수체육학과	자활 및 지역복지전공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보육과			

- 이 외 추가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의 인정 범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위원회에서 결정(심의를 위한 서류: 심의 요청 공문, 교과과정 편성 관련 서류 등)

● 법 적용 기준

- 반드시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위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후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자격인정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동 조항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동 조항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졸업),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 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일반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 서류
-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경력 인정 기준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에 대해 모두 인정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인정 기준

- 동 조항에 따른 장애영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수료 필요

※ 동 조항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인정 가능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일반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인가증 사본 또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서 사본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011. 12. 8.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 2014. 2. 28. 이전까지에 한함)

●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별표7]에 의한 특별 직무교육 중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법 적용 기준

- 변경 전 기준(2005. 1. 30. ~ 2014. 2. 28. 이전) 적용
 - 2014. 2. 28.까지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과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수료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동 기준 적용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동 조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2014. 2. 28.까지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 불인정

● 자격인정 시점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과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 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일반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 서류
-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⑤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대상자 및 기준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 인정
 - ※ 동 조항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자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경력증명서(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
- 부설 어린이집이 설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인정함. 이 외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상근직이어야 하므로 겸직 불가함.

나.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 자격검정 기준 적용

-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서 시설장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영유아보육법」 부칙(제7785호)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보육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 관련조항

2005. 1. 30. 시행 「영유아보육법」 부칙 7785호 ②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시설장 자격기준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 1991. 8. 8. ~ 1996. 1. 5.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 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1994. 2. 18)
11.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1996. 1. 6. ~ 2005. 1. 29.

1~6. 동일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 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1996. 1. 6)

8.~10. 동일

11. 삭제(1996. 1. 6)

12. 동일

• 1998. 9. 4. ~ 2005. 1. 29.(중복)

외국에서 시설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경력인정범위 및 판단기준

● 사회복지업무 경력

사회복지업무 경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 포함)

- 경력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관할 시·군·구청에 보육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보육시설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라.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2)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 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기준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을 근거로 인정여부 결정
-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다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인정여부 결정
- 사회복지/아동복지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무 당시 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회복지/아동복지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세부 항목별 자격검정 기준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 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는 동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한 자

-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보육실습(1998. 3월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
-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 제8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중 1998. 2월까지 졸업한 자는 보육실습 필수사항 아님.

● 경력 인정 기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졸업 후 2005. 1. 29.까지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졸업증명서
- 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사본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2005. 1. 29.이전 「교육법」 및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2005. 1. 29. 이전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 2005. 1. 29. 이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2005. 1. 30. 이후 졸업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
- 대학원에서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관련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
- 다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및 학점이 부족할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보육 실습 필수이수)과 연계 가능
 - ※ 대학에서 모든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후 대학원에서 보육 비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대학에서 보육과 전혀 무관한 학과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보육실습 필수 이수)

● 법 적용 기준

- 2005. 1. 29. 이전 대학원 졸업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2005. 1. 30. 이후 졸업자
 - 2005. 1. 30.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졸업할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 2005. 1. 30.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자의 경우 졸업 시 시설장 자격 인정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 18691호 2005. 1. 29. 제3조제1항)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석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사본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 2005. 1. 30.시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에 관한 기준이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2005. 1. 29.이전에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 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대상자

-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까지 1년 이상의 진료 경력에 있는 자
 - ※ 2005. 1. 30. 이후부터 시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에 관한 사항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의사면허증 사본
- 2005. 1. 29.이전 1년 이상 진료 경력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

● 보육교사 1급·간호사·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3년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에 있을 시 시설장 자격 인정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 소지자(간호조무사 제외)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 소지자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 필요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사본
 - 2005. 1. 29.이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 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발급대상자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이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이전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7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2005. 1. 30.시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 2005. 1. 29.이전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 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7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양호교사 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등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정교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까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또는 10년 이상의 교육업무 경력 필요
 -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업무 경력과 교육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업무의 5할을 사회복지업무 경력으로 합산하여 시설장 자격 인정(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1805호, 2007.7.27. “보육시설장 자격관련 쟁점사항 처리기준 통보”)
 - ※ 교육업무 경력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정교사 취득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유치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가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자는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2005. 1. 29.이전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2005. 1. 30.시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중·고등학교 자격 소지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동 조항에 따른 자격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자격 인정 시점

- 중·고등학교 정교사에 대한 규정은 1996. 1. 6. 「영유아보육법」 시행 시 추가된 바, 1996. 1. 6. 이후를 자격 인정 시점으로 함
- 1996. 1. 6. 이전 초·중·고등학교 정교사로 교육경력 10년을 충족하였더라도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1996. 1. 6.로 명시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정교사 자격증 사본(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2급 자격증 사본)
-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 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대상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도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기관장(기관장 사무 보좌직 포함) 등)에는 경력 불인정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한 자는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검정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005. 1. 29.까지 사회복지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담당 업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 대상자
 -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자격인정 시점
 - 1994. 2. 17.이전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 자 : 1994. 2. 18.

※ 1994. 2. 17. 이전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영유아 30인 미만의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었으므로,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 취득시점을 1994. 2. 18.로 봄

- 1994. 2. 18.이후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 자 :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일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1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1996. 1. 6.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 1996. 1. 5 이전에 승인 받은 자에 한함)

- 1996. 1. 5.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승인받은 자
- 자격 인정 시점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시점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승인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 보건사회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시설은 다음과 같음
 - 1991년 ~ 1995년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 1996년 ~ 1998년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보건복지부장관 위탁기관

※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은 1991년 ~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자격인정 시점

- 1991. 8. 7. 이전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 1991. 8. 8.
- 1991. 8. 8. 이후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 과정 수료 일자
- 조건부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이수자는 수료증명서 상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자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조건부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은 '96년 ~ '98년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한시적 조건부 시설인가를 받고 시설을 운영(예정) 중인 보육시설의 장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설설치 이전 갖추지 못한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수료증명서 상에 명시된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시설장 자격을 인정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양성교육과정 수료증명서
- 조건부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수료자의 경우 수료요건에 명시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비고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은 자(1998. 9. 4. ~ 2005. 1. 29.)

● 대상자

- 2005. 1. 29. 이전에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 및 2005. 1. 30. 현재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동 조항 삭제

● 자격 인정 시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은 시점

※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바, 자격 인정 시점을 승인을 받은 날로 봄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자격증명 서류 원본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
※ 재외공관장이란 자격을 취득한 나라의 한국대사관을 말함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 8. 7.이전)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 자격검정 기준

- 시설장 자격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1991. 8. 8. 제정된 바, 시행규칙 제정 전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함(1991. 8. 8. 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1991. 8. 8.) 전 새마을 유아원, 탁아시설, 사업장 육아시설에 채용된 자로서 1991. 8. 7. 이전까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관련조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시설장 자격기준

시설장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1989.9.19. 일부개정)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보육사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1989. 9. 19)

6.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의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 항목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1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관련 학과 전공·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아래 사회복지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사회복지관련 학과 인정 범위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과

● 경력 인정 기준

- 경력은 1991. 8. 7. 이전 경력에 한하고,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1991. 8. 7. 이전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로서 1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시설장 자격 인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
 - 1991. 8. 7. 이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졸업증명서
- 양성과정이수 증명서/자격검정시험 합격증서(4년제 관련학과 외 졸업자)

- 1991. 8. 7. 이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 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경력
 -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연구 수행 경력 인정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로 1991. 8. 7. 이전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5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사 1급·직업훈련교사·간호사·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
 - 1991. 8. 7. 이전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 한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 소지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 소지자
- 제출서류
 - 보육사 1급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보육사 1급 자격증명서
 - : 사회복지 관련학과 대학(교) 졸업 증명서
 - :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 대학(교) 졸업 증명서, 양성교육과정 수료 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 보육사 2급 자격 증명서류,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과정 수료 증명서, 보육사 3급 자격 증명서류,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 증명서류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 졸업 증명서
-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 시험 합격증

: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에 관한 보수교육 수료 증명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직업훈련교사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직업훈련교사 자격증(노동부장관 발급)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사회복지업무 경력(7년 이상) 증명서류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제출 필요(재직 당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간호사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간호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영양사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6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의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함)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변천 〉

구분	시설장	보육시설장	어린이집 원장	
	1991. 8. 8 전	1991.8.8.~2005. 1.29	2005.1.30.~2014.2.28	2014. 3. 1 이후
일반	• 4년제 관련학과¹⁾ 졸업 + 3년 경력 • 의사 + 3년 이상 진료경력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4년제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 졸업 + 양성교육과정 이수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 + 5년 경력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 3년 이상 연구 경력 •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및 영양사 + 7년 경력 • 유치원·초등정교사 + 사회복지에 관한 보수교육 + 5년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 + 5년 경력 • 유치원 원장 (탁아시설에 한한다)	• 4년제 관련학과²⁾ 졸업 + 3년 경력 •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등록자 • 사회복지사 2급 + 3년 경력 • 의사 + 1년 이상 진료경력 •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영양사 + 5년 경력 • 간호조무사 + 7년 경력 • 유치원·초등정교사, 중·고등학교 정교사 + 5년 경력 또는 교육업무 10년 경력 • 유치원 원장 • 7급 이상 공무원 + 3년 경력 •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보육교사 1급 + 2년 경력 • 유치원정교사 2급 + 5년 경력 • 유치원 원장 • 초등정교사 + 5년 경력 • 사회복지사 1급 + 5년 경력 • 간호사 + 7년 경력 • 7급 이상 공무원 + 5년 경력	• 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 유치원정교사 1급/특수교사(유치원 과정) + 3년 경력 • 유치원 원장 • 초등정교사/특수교사 (초등학교 과정) + 5년 경력 • 사회복지사 1급 + 5년 경력 • 간호사 + 7년 경력 • 7급 이상 공무원 + 5년 경력
40인미만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가정			• 2급 + 2년 경력	• 1급 + 1년 경력
영아전담			• 간호사 + 5년 아동간호 경력	• 간호사 + 5년 아동간호 경력
장애아 전담			• 일반자격 +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 • 일반자격 + 장애아어린이집 2년 이상 경력 • 일반자격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 일반자격 +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 • 일반자격 + 장애아어린이집 2년 이상 경력
비고	¹⁾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²⁾ 관련학과 :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받아야 함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2.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6. 8. 1.시행)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 자격검정 기준 적용

- 2016. 8.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시행으로, 2016. 8. 1. 이후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별표 5]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14. 3.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시행으로 2014. 3. 1. 이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5. 1. 30. ~ 2014. 2. 28. 이전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은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함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제7153호. 2004.1.29.>에 따라 2005. 1. 29.이전까지의 규정(2005. 1. 29. 이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에 의한 보육교사의 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05. 1. 29. 이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등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5조

경력인정 범위 및 판단기준

●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주 40시간 미만), 경력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관리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내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사 및 조리원 경력산출 방법’ 적용하여 인정

■ 등급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검정 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 필요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장도 발급 가능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 보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 서류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 인정범위

1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을 보육관련 대학원으로 인정
 2 1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보육관련 대학원 인정(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2013년 제4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대학원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보육관련 대학원 과정을 승급교육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으로 중복 인정 불가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필요

* 관련 문서 보육정책과-11908(2017.12.28.)호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쌓거나,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쌓은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는 두 경우 모두 1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인정하는 경력에 해당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보육관련 석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 ※ 보육 관련 대학원 인정범위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 서류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기준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³⁾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⁴⁾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관련 교과목은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에 한해 인정됨.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부록1 참조)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법령상의 교과목 명칭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교과내용이 유사한 경우 자격검정기관으로 유사교과목 심의를 위한 서류(심의 요청 공문, 유사교과목 확인서,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등)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다음의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없이 인정

- 교과목 명칭에 ‘~론’을 ‘~학’으로, ‘~론’, ‘~학’을 ‘~(론), ~(학)’으로 또는 ‘론’, ‘학’을 삭제한 경우
- 교과목 명칭에 ‘~ 및~’을 ‘~과~’로 또는 ‘~과~’에서 ‘과’를 삭제한 경우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4)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영남사이버대학, 세계사이버대학

- 교과목 및 학점 기준 적용방법

구분		2016.8.1. 시행	2014.3.1.시행	2005.1.30.시행
교과목 이수기준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6개 영역, 12과목 35학점 이상
적 용 기 준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	2017.1.1.이후 입학자부터	2014.1.1. 이후 입학자부터	2005.1.30. 이후 입학자 및 2005.1.30. 이후 편·재입학, 전과, 복수전공 신청자부터
		※ 편입·재입학 등의 경우 1. 편입·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입·재입학한 동학년의 이수기준에 따름 2.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름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	2018.1.1.이후 학위취득자 부터	2014.3.1. 이후 학위취득자 부터	2005.1.30.이후 교과목 이수한 학위취득자 부터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개정, 2016.8.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개정, 2014.3.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05.1.29.개정, 2005.1.30.시행)

-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92호, 2016.1.12. 공포, 2016.8.1.시행〉에 따라 종전의 규정(6개 영역, 17과목
51학점)에 따른 교과목 이수기준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에서 정한 교과목(총 13과목)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시기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4]의 2. 대면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 사이버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시간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여부를 성적증명서 또는 '대면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보육교사론 2. 아동복지(론) 3. 놀이지도 4. 언어지도 5. 아동음악 6. 아동동작 7. 아동미술
8. 아동수학지도 9. 아동과학지도 10. 아동안전관리 11. 아동생활지도 1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3. 보육실습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2017년 3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교사론	보육교사(인성)론
놀이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보육실습

● 보육실습 기준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기관에서 보육 실습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이 경우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교과목 이수 및 실습 기준)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 대면교과목 비고 2의 가~마항의 기준을 적용

※ 이론수업 진행 시 대면교과목에서 정한 8시간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기준 미적용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1. 교과목 운영 :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2. 실습 시간 :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6주 240시간 적용 기준

-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 : 2017.1.1.이후에 보육실습 기관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
-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 : 2017.3.1.전에 보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사람

※ 2회에 나누어서 실시하는 방법



-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협의 하에 2주+4주, 3주+3주, 4주+2주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 가능
(2회로 나누어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실습기관이 아니어도 됨)
- 보육실습 교과목을 나누어서 개설한 경우 합산한 교과목의 학점이 총 3학점 이상이고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현장실습을 2주+4주, 3주+3주, 4주+2주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 가능
예)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1학점)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2주간의 현장실습 실시,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2학점)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4주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3. 실습 기관 :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법률 제19898호>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 종전 보육실습 규정: 2017. 1. 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단, 2018. 1. 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17. 3. 1. 이후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자부터 해당함)

※ 어린이집 평가결과 확인방법: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홈페이지(www.childinfo.go.kr) 내 “검색으로 찾기” 검색하기”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를 통해 확인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실습 인정 시간 :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함(주말 실습 인정 불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이상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한 시간만큼 인정함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5. 실습지도교사 : 실습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동일한 실습기간 내에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해야함)

6. 실습 평가 : 보육실습의 평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016. 12. 31.이전에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4주 160시간)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적용

※ 보육실습생 등록 및 관리

- 2013. 3. 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필요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및 제출한 경우에는 보육실습확인서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지도 확인 관련 증빙서류(2013. 3. 1. 이후 실습자)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방법**

- ❶ 보육실습 내용 등록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 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 ❷ 보육실습 내용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 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 ※ 주의 :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자격관리시스템)되므로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대학의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 2017년 이후 사이버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① 성적증명서를 통해 이수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되거나 ② 대면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통해 이수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보육실습확인서(보육실습 이수 시기별 양식)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 필요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법 적용 기준

- 변경 전 기준(2005. 1. 30. ~ 2014. 2. 28.이전) 적용
 - 2014. 2. 28.까지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추고 승급교육을 수료한 자로,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경우 변경 전 기준 적용
- 2014. 2. 28.까지 변경 전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 적용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제출 필요

● 자격인정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시 자격인정 시점은 2014. 3. 1. 이후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2급 승급교육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보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 서류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③ 보육교사 3급 자격검정 기준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2016. 8. 1. 이후 입학자부터는 3개 영역 총 22과목 65학점 이수 필수(부록1 참조)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료증명서
 -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2011년 9월 이후 수료자부터)
 - 보육실습확인서(2011년 9월 이후 수료자부터)
 - ※ 보육실습생 등록 및 관리(보육교사 2급의 관리 방법과 동일)
 - 2013. 3. 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필요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및 제출한 경우에는 보육실습확인서의 첨부서류(실습 기관 인가증 사본,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지도 확인 관련 증빙서류(2013. 3. 1. 이후 실습자)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나.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검정 기준

■ 자격검정 기준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영유아보육법」 부칙(제7153호) 제3조제1항(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 1. 29. 이전까지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7153호 부칙 제3조제1항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조항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경력인정 범위 및 판단기준

●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관할 시·군·구청에 보육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방과후 과정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및 방과후 과정 운영 관련 공적서류

■ 등급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검정 기준

1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996. 1. 5.까지 영유아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동 승급 대상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인정되는 자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필요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1996. 1. 5.까지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동 승급 대상자로 인정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인정) 시점은 교육부 자격기준에 의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 수료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 보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996. 1. 5.까지)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996. 1. 6 이후에는 반드시 승급교육을 수료하여야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필요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인정) 시점은 교육부 자격기준에 의함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로 승급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추가검정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1991. 8. 8.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고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미위탁 교육훈련시설 수료증만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2005. 1. 29 까지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3년 이상 경력과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의 자격증 신청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논의 및 담당부처의 추가검정 지침으로 기준이 마련됨

●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수료자

-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한 자
 - 미위탁 시설 수료자들은 종전 영유아보육법 적용시기인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 업무 경력 3년 이상이 경과하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는 보육교사 1급으로 자격인정 가능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1급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승급 수료증명서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미취업시설 수료증 사본 (자격인정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3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자격 인정 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의해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보육실습 필수)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음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적용 시기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1998년 3월 이후 졸업자 보육실습 필수 이수)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를 신청한 자는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1998년 3월 이후 졸업자 보육실습 필수 이수)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신청 가능

※ (편)입학 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및 교과목 인정기준은 [부록3.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대학의 학위수여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확인 가능 필수)
- 보육실습확인서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 시기에 따른 양식)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추가검정기준**

1998년 3월 이후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였으나,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보육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시설에 임면보고되어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격증 신청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담당부처의 승인으로 추가검정기준이 마련됨

●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 이수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로 보육실습 미이수 자가 이에 해당 됨)

- 보육업무 1년 이상(2005. 1. 29. 이전까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적용시기 내에 보육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대학의 학위수여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확인 가능 필수)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사본
 - 2005. 1. 29. 이전까지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기준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 수료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 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998. 12. 31.까지 해당)

- 사회복지사 3급 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1991. 8. 8. ~ 1998. 12. 31.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이에 해당 됨(1998. 9. 4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999. 1. 1 이후부터 폐지조항으로 삭제)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시설 수료증명서(24주 이수 확인)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 8. 7.이전)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 자격검정 기준

- 「아동복지법」 시기에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및 어린이집에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1991. 8. 7. 이전에 충족한 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 및 자격인정 배경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부칙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95호, 1991. 8. 8. 제정) 부칙 제3조, 제5조

- 보육교사 자격인정 배경

: 1991. 8. 8. 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 자격을 인정

관련조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5조

***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 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5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 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 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부칙에 의한 「아동복지법」 상 자격소지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2])

「아동복지법」 (1983. 3. 1 ~ 1991. 8. 7 이전)		「영유아보육법」 (1991. 8. 8부터)
교 사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자	보육교사 1급
보육사 1급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3. 보육사2급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사 2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 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사3급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	보육교사 2급

■ 등급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검정 기준

1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아래 사회복지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사회복지 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유아교육학과, 가정교육과, 간호학과, 의학과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최종학교(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2년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사본

- 최종학교(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3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 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탁아시설에 채용된 경력이 있는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추가검정기준**

대학은 졸업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대학졸업 이외의 경로(준교사→정교사)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1991. 8. 7. 이전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바는 없으나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심의·의결 및 담당부처의 승인으로 추가검정기준이 마련됨

-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단, 2005. 1. 29. 이전 「영유아보육법」 적용시기 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이어야 함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사본
 - 2005. 1. 29. 이전까지 1년 이상 보육시설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사 2급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대상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을 인정하며 이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보육사 2급⁵⁾**

- ❶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❷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❸ 유치원 또는 초등(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을 마친 것으로 봄

● 제출서류

1에 해당되는 자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이전)
- 최종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 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재직 당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에 해당되는 자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보육사 3급 자격증명 서류
 - 최종학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사회복지업무 경력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보육사 3급 취득 후 3년 및 보육사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재직 당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 1991.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 과정을 마친 것으로 봄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에게 보육교사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이수하도록 함
 - ②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③ 유치원 또는 초등(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유치원(초등학교)준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 사회복지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됨

3에 해당되는 자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 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재직 당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기준

1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2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 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 증명서류,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증(재직 당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3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초등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유치원(초등학교)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탁아시설에 채용된 경력이 있는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유치원(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본(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1991. 8. 8.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 1. 13.까지 영유아 보육업무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마친 자

-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수료자
 -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위탁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한 자를 미위탁 시설 수료자로 봄
 - 미위탁 시설 수료자는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3항에 의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함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미위탁 시설 수료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보수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보육교사 2급으로 자격 인정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미위탁시설 수료증명서(150시간 이상)
 - 보육교사 자격인정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추가검정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이 아닌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2005. 1. 29. 이전까지 이수한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미위탁 교육훈련시설 수료증만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2005. 1. 29.까지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의 자격증 신청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논의 및 담당부처의 승인으로 추가검정기준이 마련됨

-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수료자
 - 보건사회부령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수료한 수료증을 제출한 자
 - 미위탁 시설 수료자들은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육교사 자격인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자
-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2005. 1. 29. 이전까지)
 - 미위탁 시설 수료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보수교육은 수료하지 못하고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
 -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관련 보수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미위탁시설 수료증명서
 - 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2005. 1. 29. 이전까지)
 -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천 〉

구분	보육사	보육교사			
	1991.8.8. 전	1991.8.8. ~ 2005.1.29.	2005.1.30. ~ 2014.2.28.	2014.3.1. 이후	2016.8.1. 이후
1급	관련학과 졸업자 ¹⁾	10과목 30학점 (98년 3월 이후 졸업자 보육실습 필수)			
	대졸이상 + 양성교육과정 이수 혹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2급 취득 후 3년경력 +승급교육80시간	2급 취득 후 3년경력 +승급교육80시간	2급 취득 후 3년경력 +승급교육80시간
	2급 취득 후 3년경력 +보수교육	2급 취득 후 3년경력 +승급교육80시간			
2급	유치원 또는 초등정교사 +보수교육				
	고졸이상 + 양성교육과정	고졸이상 + 보육교사교육원 (1,000시간 이상)	12과목 35학점	17과목 51학점이수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이수 (3개영역)
	3급 취득 후 3년경력 + 보수교육		3급 취득 후 1년경력 +승급교육80시간	3급 취득 후 2년경력 +승급교육80시간	3급 취득 후 2년경력 +승급교육80시간
3급	유치원 또는 초등준교사 +보수교육				
	고졸이상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고졸이상 + 보육교사교육원 (25과목 65학점)	고졸이상 + 보육교사교육원 (25과목 65학점)	고졸이상 + 보육교사교육원 (22과목 65학점)
비고	¹⁾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 자격검정 기준 적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1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2012.8.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943, 2021.12.23.)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를 위한 편입 및 입학 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적용사례 〉

- ① '12.8.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8.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 ② '12.8.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12.8.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원본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2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2012.8.5.)당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2016.3.1.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2012.8.5.) 당시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여 2016.3.1.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제출서류

-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및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직무교육 이수증 원본

※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자가 경과조치 대상자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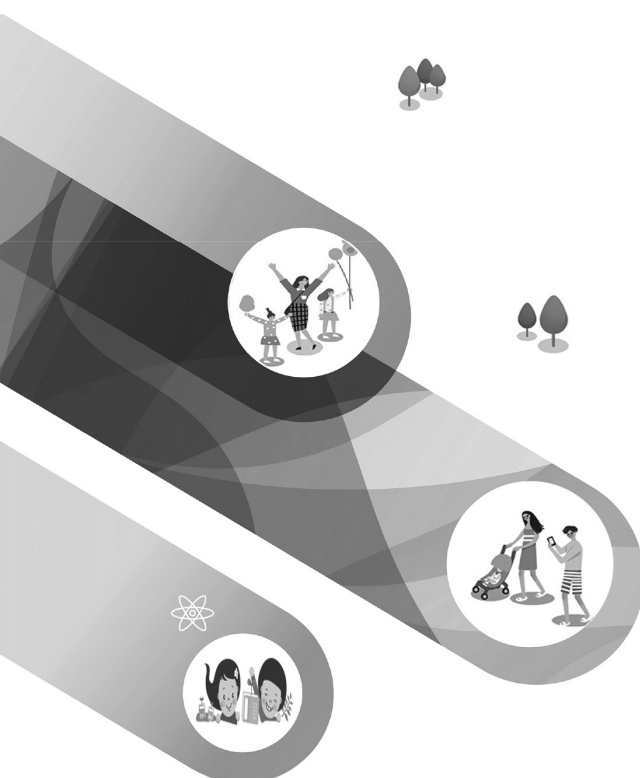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당시(20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각각 법 제22조 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Chapter



질문과 답변



Part
III

질문과 답변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Q1	[원장 자격]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어린이집 원장을 취득할 수 있나요?
A1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2005.1.29. 까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거나 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2005. 1.29. 이전 당시의 자격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양호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2005.1.30.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기준이 삭제되어 사회복지업무 경력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있더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가정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정교사 1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1년 이상 충족한 경우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A2	현행법 자격기준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시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를 충족한 경우’ 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2005.1.29.이전에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3	2005.1.29.이전 영유아보육법 자격기준에 따라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2005.1.29.이전 자격기준 대상자이므로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원장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마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4	2014년 3월 1일 이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자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사전직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사례)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상위 자격종인 일반 원장, 장애아전문 원장 자격 취득 시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추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원장사전직무교육] '14.3.1.이전에 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4.3.1이후에 타 원장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5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자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일반원장 자격인정일자] 보육교사 1급 자격인정일자로부터 3년 경력 충족 이후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정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A6	현행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따르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일반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3년 경력 충족, ② 원장사전직무교육 수료의 조건을 모두 완료한 시점(원장사전직무교육 수료일)이 자격인정일자가 됩니다. ※ 해당 기준은 보육교사 승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보육교사 자격기준

Q1	[자격취득 요건] 보육실습 일수가 부족하여 졸업 후 추가실습을 진행하였는데 인정 가능한가요?
A1	법제처의 법령해석례(10-0021, 2010.3.11.)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이수 인정을 받은 뒤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학위과정 안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교과목 및 학점 이수, 보육실습 기준 충족)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 개별 판단에 따른 추가 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편입학] '03년에 교육학과 졸업 후, '05년에 유아교육과에 편입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A2	2005.1.30.전에 편입신청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2005.1.29. 이전 기준에 따라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2005.1.29. 후에 편입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Q3	[경력인정 관련] 육아휴직 기간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시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A3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및 보육업무 경력은 상위 자격 승급이나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실 근무 경력이 구비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Q4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령(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A4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백석예술대학, 세계사이버대학, 영남사이버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이 있습니다. 위의 대학은 학위취득시점에 따라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Q5	[초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5	2005.1.29.이전 초등교육과 졸업자의 경우 해당 기준 적용시기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 졸업자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므로 초등교육학과 졸업자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보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5. 1. 29.이전 당시 기준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1019(2007.4.25.),「보육교사 자격기준 재해석 및 추가검정기준 통보」
Q6	[석사 학위 소지자]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의 승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보육관련 대학원 인정범위 1.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2. 1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단, 석사학위 이상 취득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Q7	[대면교과목 이수기준] 대면교과목 이수 시, 출석 수업(8시간)을 나누어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7	출석 수업의 운영방식은 교육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석수업(8시간)을 나누어서 수강 가능하며 과목당 총 8시간 이상 대면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1회 이상 출석 시험은 8시간 출석 수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해외유치원 경력] 해외병설유치원(예.선양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 가능한가요?
A8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교육기관의 형태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한국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재외교육기관 근무경력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양한국국제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된다는 공적 서류(정보공개 요청 등) 제출 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또는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보육실습 기준

Q1	[실습기준] ‘보육실습’ 교과목도 대면교과목 이수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1	보육실무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의 보육실습 기준을 따라 6주 240시간의 보육현장실습이 운영되므로 대면교과목 이수기준(8시간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시험)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실습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성적증명서 상 보육실습의 성적이 “P”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육실습 평가점수(80점 이상, B학점 이상)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육실습 점수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또는 보육실습 평가점수 확인 공문 및 학과내규 등)
Q2	[실습기관] 국공립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인가서가 별도로 없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A2	인가서가 없는 국공립유치원 등의 경우, 방과후과정 운영시점 및 보육정원을 명기한 실습 기관장 또는 학과장 발행 공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Q3	[실습기관] 보육실습 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완료’였으나 실습기간 도중 ‘평가중’으로 변경된 경우, 실습 인정이 가능한가요?
A3	보육현장실습 기관의 적합 여부는 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육실습 시작 당시 기준에 적합한 기관(평가완료)이었으므로 실습기간 동안 상태가 변경되어도 인정 가능하며, 분할실습의 경우 각각의 실습시작 시점에 실습기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 실습시작일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완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정보공시화면 등)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실습기간] 실습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추석연휴 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법정공휴일(추석연휴 등)이 있는 경우 공백이 발생한 연휴 기간만큼 연속하여 보육실습을 이수하면 됩니다. 실습기관의 방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되나 자격증 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학기간 안내문, 어린이집 보육계획안, 출근부 등)를 실습 기관장의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실습확인서]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보육실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보육실습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장의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인정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한 폐원 확인 내용(정보공개 요청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6	[실습확인서] 양성기관(대학)이 폐교되어 보육실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6	양성기관(대학)이 폐교되어 보육실습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습기관(어린이집 등)에서 학과장 확인(직인 날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습기관 및 양성기관(대학)이 폐원·폐교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실습자료 또는 폐교대학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된 실습자료가 존재하고 실습 내용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문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습자료가 부존재하고 실습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Q7	[실습교과목] 실습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보육현장실습’과 ‘보육실습’ 교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인정 되나요?
A7	‘보육실습’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는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입니다. 따라서 인정범위 내의 교과목 명칭으로 이수한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보육실습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학점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교과목 학점의 합이 3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2회의 보육 현장실습 기간의 합이 6주 24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 합산이 가능하며, 보육실습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야 함

4. 교과목 및 학점 기준

Q1	[유사교과목 심의] 유사교과목 심의절차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령상의 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다른 경우 별도의 유사 교과목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사교과목 인정 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교과목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학과/해당학기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교육기관(대학, 학점인정기관 등) 발행 공문, 유사교과목확인서, 심의요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Q2	[적용기준] 1998년 8월 졸업자가 이수해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은 무엇인가요?
A2	1998년 8월 졸업자가 이수해야 하는 학점 이수기준은 2005.1.29.이전 당시 기준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 2항 관련 [별표4]에 따른 10과목 30학점(보육실습 이수 필수) 이상 이수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적용기준] 2005년도 대학 입학자의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A3	2005년 입학자의 경우 2005.1.30.부터 2014.2.28.이전 당시의 기준(12과목 35학점 이상)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05.1.29.이전 기준에 따른 교과목과 혼용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해야 합니다.
Q4	[적용기준] 타과에서 개설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인정되나요?
A4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졸업한 경우에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5	[교과목 합산] 아동미술이 I,II로 개설되어 각각 2학점, 1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교과목을 합산하여 3학점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학점으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육실습 교과목의 경우 보육실습 I, II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6	[적용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재)입학 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A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재)입학 하는 경우 동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례) 2018년에 3학년으로 편(재)입학하는 경우, 2016년 입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및 학위취득 조건(6개 영역, 17과목 51학점)이 적용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대면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Q7	[적용기준]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하였으나 교과목이 부족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합니다.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7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이수 교과목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 시점에 따라 자격기준이 적용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는 학위취득 시점에 따라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교과목 합산 시에는 가장 최근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 2014년에 대학을 입학하여 교과목 이수 후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 교과목 이수 후 2025년 학위를 취득한 경우, 3개영역(17과목 51학점) 자격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Q1	[교과목 이수기준] 2012.8.4. 이전에 편·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목 이수기준 적용방법은 무엇인가요?
A1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1) 2012.8.4. 이전에 A대학을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2012.8.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과목 16학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례2) 2012.8.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2012.8.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과목 16학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2	[제출서류] 평생교육원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등록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행의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서류 심사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유사교과목]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 교과목의 유사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교육부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의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표준교과개요(2018)’를 개발하였습니다. 교과목 별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보편적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내용과 자격 신청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학과/해당학기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교육기관(대학, 학점인정기관 등) 발행 공문, 유사교과목확인서, 심의요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Q4	[신청수수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직무 교육 80시간을 이수한 경우, 수수료 면제에 해당되나요?
A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확인서 신청 수수료는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불인정] 교과목 이수내역이 부족하여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격확인서 재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5	교과목 이수 부족으로 자격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부족한 교과목만큼 추가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중복교과목이수] 중복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개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A6	중복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1개의 교과목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대학에서 2021.1학기에 '특수아 행동지도'를 이수하고 졸업한 후, 부족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학점은행제에서 2022.1학기에 '특수아 행동지도'의 유사교과목인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를 이수한 경우에는 '특수아 행동지도' 또는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중 1개의 교과목만 인정가능
Q7	[교과목 이수과목]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교과목은 모두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나요?
A7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은 전공(선택·필수), 교양(선택·필수)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Q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 등은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서류 유효기간]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2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3	[성범죄 경력 확인]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개인이 조회 또는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나요?
A3	현재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본인 조회나 취업 기관 제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자격 취득을 위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목적과 다른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 시 양쪽(개인, 자격검정기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며, 성범죄 경력은 자격검정기관에서 일괄 조회만 가능함

부 록

1. 보육교직원 자격 제도 관련 법령

2.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세부 지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의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여성가족부 2006.5.30.)
- 보육교사 3급 제출서류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2011.5.25.)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 기준 안내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2014.3.1.시행)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2016.8.1.시행)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등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2014.3.1.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사항

3. 자격증 신청 관련 서식

- 보육실습확인서
- 간접실습확인서
- 대면교과목 이수확인서
- 유사교과목 확인서

1. 보육교직원 자격 제도 관련 법령

● 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업무의 위탁)

-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④ 삭제 (2011. 8. 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⑥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 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 나.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4], [별표5]

-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8.6. 개정, 2024.8.14.시행]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교육부령 제332호, 2024.6.27. 개정, 2024.6.27.시행]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면 교과목

영역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2.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 나.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별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습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한다.
 -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일부개정, 2014.3.1.시행]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비교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령 제154호, 2012.8.17., 일부개정, 2013.3.1. 시행)

- 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나.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성부령 제14호, 2005.1.29., 전부개정, 2005.1.30.시행]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비교

- 1)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6호, 1996.1.6., 일부개정]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제8조제2항 관련)

다음 교과목중 총 10과목(30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서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수를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유치원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구분	교과목	비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등 (36과목)	아동교육개론 (철학), 유아교육(이)론, 아동심리(측정),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자녀양육, 아동상담, 아동문학, 아동사회학, 부모교육(론), 창작놀이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과율동, 심리학개론, 아동의 신체, 인지 발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장애자복지(론), 아동학실습, 특수아동(교육), 영아기발달, 유아지도법, 유아연구, 특수아부모교육, 아동놀이, 의식심리학, 미술지도및실습교육,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철학, 현대교육사조, 주거환경론, 사회사업(방법)론,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유아문학	교과목 중 총 2과목 (6학점)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영유아발달과 교육 등(47과목)	유아교육교수법, 유아언어교육, (교수)학습이론, 놀이이론과 교육, 아동 관찰법, 아동발달(이론), 자료선택과 교구제작, 유아관찰, 특수교육(개설), 유아교육과정, 인지이론과 교육, 영유아 프로그램(개발), 발달단계별 교육 계획, 아동문제 및 지도, 영유아발달, 아동(학)연구법,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아동발달연구, 유아놀이지도, 아동행동관찰, 인지발달(지도), 현장 관찰, 학습장애아교육, 정서및사회부적응아 교육, 심리검사및개별지도, 특수교육 교재개발, 정서및사회부적응아 교수방법, 보육학, 아동연구, 행동 장애와 사회환경,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조직(론), 간호학개론, 기초건강과학, 아동간호학, 발달이론, 주거원리, 현대사회와 가정, 인지 심리학, 피복정리 및 관리,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연구, 식품(과)학, 부모아동관계 세미나	교과목 중 총 3과목 (9학점)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 등(41과목)	유아건강교육, (유아)정신위생, 어린이임상심리, 소아의학(과학), 생리학, 아동영양건강,식생활관리, 영양생화학, 식이요법, 기초영양학, 응급처치, 고급영양학, 조리과학, 특수영양학, 응급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지역 사회의학, 가족치료(론), 기생충학, 내과학, 행동과학, 진단학, 임상심리학, 가정간호학, 모자보건, 학교보건, 심리검사, 생리심리학, 약리학, 생화학, (임상)병리학, 생활지도, 교수공학, 특수체육, 특수아행동교정, 아동행동연구, 의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의료사회사업, 임상사례연구	교과목 중 총 3과목 (9학점)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 등(41과목)	인간행동의심리학적기초, 가족심리(학), 가족발달, 인간생태학, (지역)사회 개발(론), (태도)사회학, 발달심리학, 가족관계(학), 인간관계론, (교육)사회 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교육)인류학, 교육철학(개론), 교육과 문화, 사회 보장(론), 가정과 지역사회, 인간발달(학), 교육사회학, 인간발달과 교육, 교육원리, 동양교육사상사, 교육고전, 개발사회사업(론), 집단사회사업(론), (한국)교육사, 개별지도, 집단지도(론), 가족학(개론), 사회사업(복지)실습, 자원봉사론, 조직심리학, 사회정책, 사회복지사, 사회조사방법(론), 한국교육 사상, 학습장애아 교수방법, 정신지체아교수방법,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음식과문화, 가정경제	교과목 중 총 2과목 (6학점)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 2017.9.15. 개정, 2017.9.15.시행]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 (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2과목 (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 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 교수 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 (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 (3학점)	18과목 (52학점)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과목 (7학점)

※ 비고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 (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 이상	

※ 비고

-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교육부령 제346호, 2024.11.26. 개정 2024.11.26.시행]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2조 관련)

1.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학점	8과목(16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영유아교수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교육, 지적장애아 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적장애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보육학 개론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아동발달론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2.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 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 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 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교육, 지적장애아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적장애아심리 및 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 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3. 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이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4.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로 한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운영·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훼손하거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3.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1호, 제2호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발급 수수료) 제5조에 따른 자격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다. 제33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라.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489호, 2024.6.27. 신설 2024.6.27.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관련된 개별·특수사례의 자격인정 여부
2.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유사교과목의 인정 여부
3.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보육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
4. 그 밖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의 보육관련학과 교수
 2. 보육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5. 교육부의 자격검정 업무 담당자
 6.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가
-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6조에 따른 업무대행의 경우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위원의 임명은 1년에 재직위원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검정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9조(안전의 상정) ① 간사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안전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 ① 회의에 상정된 안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완료되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자격검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간사는 상정된 안전 및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대행)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영유아보육법령 자료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세부 지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의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가. 학점은행제 학점이수자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386, 2006.2.6.)

- 2005. 1. 29. 이전 졸업자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 1. 29.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종전법에 의하여 보육교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법)
 - 2005년 1월 29일 이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현행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 연계가 가능함
-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현행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이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학위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실습지도교사의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법제처, 2010.3.1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021)



질의요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 답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 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함)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와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점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이수·인정을 받은 뒤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학점인정 기준 제1호에 따라“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 일정 학점에 이를 때 대학 졸업학력(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학력(80학점 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규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법령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거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학교에서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여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육교사의 자격을 주려는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 제50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여성가족부 2006. 5. 30.)

-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부는 「보육사업안내」에서 (편)입학 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및 교과목 인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 일부 대학에서 개정법에 의한 교과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적용 시점에 관한 논란이 있어 (편)입학 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및 교과목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가.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자의 경우

1) 대상자

-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자란 2005년 1월 30일 현재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자로 아래 경우를 말함

구 분		대 상 자
입 학 생	학과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학부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부가 소속된 학부에 재학 중인 자
	계열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부가 소속된 계열에 재학 중인 자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생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학부, 계열)로 편입한 자, 전과한 자, 복수전공하고 있는 자 ※ 편입, 전과, 복수전공 시기가 2005년 3월이더라도 2005년 1월 30일 현재 편입, 전과, 복수전공 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재학 중인 자로 인정. 다만, 자격증 발급 시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 동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교과목 중 총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실시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과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함

3)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종전법에 의한 교과목의 경우 과목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로써 유사교과목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
- 현행법에 의한 교과목의 경우 보육기초, 보육실습 영역의 교과목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영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별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2009년 보육사업안내부터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 심의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함을 안내하고 있음

4)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구분	교과목 인정 기준	학점 인정 기준	자격 등급
변경전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를 인정 ● 2006학년도부터는 현행법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보육실습 실시	10과목 30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1급
변경후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 이수 ● 보육실습 실시 ※ 종전법과 현행법 규정에 의한 교과목을 혼합하여 이수하여도 무방	10과목 30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1급

나. 2005년도 입학자의 경우

1) 대상자

- 2005년도 입학자란 2005학년도에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자 및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

2)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실시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정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정
- 종전 법과 개정 법에 의한 교과목을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함

※ 입학년도에 따라 교과목 설치·운영이 되는 대학 실정에 따라 2005학년도부터 개정 교과목을 시행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으므로, 종전 법과 개정 법에 의한 교과목을 모두를 인정하며,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

3) 유사 교과목 인정 범위

-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자의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와 동일

4)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구분	교과목 인정 기준	학점 인정 기준	자격 등급
변 경 전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 이수하는 경우 및 개정법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모두 인정 • 다만, 현행법 교과목의 영역 중 보육기초, 보육실습 영역은 반드시 이수 • 보육실습 실시	12과목 35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2급
변 경 후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 이수하는 경우 및 현행법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모두 인정 • 보육실습 실시	12과목 35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2급

다. 200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 대상자

- 2006년도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

2)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정

※ 200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현행법에 의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3) 유사 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기초, 보육실습 영역의 교과목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영역은 유사교과목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별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2009년 보육사업안내부터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 심의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함을 안내하고 있음

라. 편입학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에 대한 적용

1) 배경

- 대부분 대학의 경우 학과 및 학과목 운영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바, 편입생의 경우 주로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는데 편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입학년도에 따른 신·구법 적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졸업 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전과생 및 복수전공생의 경우도 그 시점이 4년제 대학의 2학년, 3학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졸업 시 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따라서,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에게는 별도의 적용 기준이 필요

2)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학점 인정 기준 및 졸업 시 보육교사 자격등급은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법과 현행법을 적용 하되, 교과목은 탄력적으로 적용

- 교과목 인정 기준
 - 교과목 인정 기준은 편입, 전과, 복수전공 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기준에 따름
- 학점 인정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총 10과목 30학점 이상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총 12과목 35학점 이상
- 자격등급 인정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보육교사 1급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3급 제출서류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2011. 5. 25.)

가.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735, 2011.5.2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의 경우 자격증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보육실습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실습이 이론으로만 배웠던 보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육 현장에서 실제로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검정과정에서 보육실습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실습이 부실하게 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그 동안 제출이 생략되었던 보육실습확인서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도록 변경하니, 아래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변경사항을 참조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귀 교육원의 교육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139~140쪽)의“(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제출) 서류 중 보육교사 3급의 구비(제출)서류란” 변경

현 행	변 경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신 설〉	③ <u>보육실습확인서</u>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신 설〉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적용시기 : 2011년 9월 1일 이후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부터 적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의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동 기준 위반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육실습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38, 2011.9.15)

- 우리부에서는 '11.9.1.이후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부터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발급 신청시 보육실습확인서 및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관련 문서 : 보육사업기획과-1735호, 2011.5.25.)토록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한 사례 중 법령상 교과목 명칭 불일치, 이수학점 및 평가점수 누락 등으로 자격검정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5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의 교과목, 학점 기준 등 준수
-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에는 영역별 이수 교과목, 이수학점 및 각 과목당 평가점수를 반드시 포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 합격 기준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붙임 :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예시)

제 호

성 적 증 명 서(예 시)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성 명				생 년 월 일			
영 역	교 과 목	학점	성적	영 역	교 과 목	학점	성적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3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	2	
	보육학개론	3			아동안전관리	2	
	보육과정	3			아동영양학	2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지역사회복지	3	
	아동생활지도	3			보육정책	2	
	아동상담(론)	3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3	
	특수아동지도 (특수교육학)	3			정보화교육	2	
	영유아보육의 실제	3					
	방과후아동지도	2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3		보육실습	보육실습 이론	2	
	언어지도	2			보육실습		
	아동음악과 동작	2		총 이수학점			
	아동미술	2					
	아동수·과학지도	2		총 이수시간			
	교재교구개발	3					
	영유아교수방법(론)	3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직인)

* 성적증명서는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사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다만, 영역별 교과목 및 이수 학점, 평가점수(성적), 총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은 반드시 포함

** 성적은 백분위 점수로 표시(예 : 90점, 73점). 만약 A, B, C 등으로 평가시 각각의 점수를 별도 표시 (예 : A(90점), B(70점))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 기준 안내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인정 기준 통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53, 2011.9.16)

- 최근 육아휴직 및 병가기간(업무상 재해)을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에 필요한 경력기간에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달리 해석·적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니,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 및 어린이집에 경력인정기준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경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은 동 기준을 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안내하는 등 자격증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을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경력기간을 마련한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호봉 확정시 경력기간으로는 산입하되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 승급교육을 받기 위한 경력기간 산정에서도 육아휴직 및 병가기간은 제외하되, 이미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은 인정

*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승진, 승급(급여 산정 관련),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라는 규정일 뿐,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보육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기간에까지 해당 기간을 포함 시키라는 취지는 아님

나.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경력 관련 질의 회신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132, 2012.4.13)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 인정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의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가 아닌 영유아플라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곤란.

다. 보육교사 자격 승급 경력 관련 유권 해석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1908, 2017.12.2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제2호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제2호의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보육교사 1급’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가.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나.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에 대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 이는, 2급 자격 취득 이후의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을 2년의 보육업무 경력과 동등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더 있으면 1급 자격기준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과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쌓거나,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쌓은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는 두 경우 모두 1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인정하는 경력에 해당됨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2014.3.1. 시행)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2013년 제3차, 제4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 영유아보육법(2014. 3. 1.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개정법(2014.3.1.시행)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나. 변경 전(2005. 1. 30.~2014. 2. 28.) 기준에 의한 자격기준 적용 대상자*가 법 개정 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대한 인정 기준

* 2014. 1. 1.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영역별	이수 교과목명(현행법)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변경 전)
보육기초 (필수)	유아발달 또는 영아발달	아동발달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음악과 동작
영유아교육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수·과학지도

- 적용 사례 1 : 2013. 3.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개정법(2014.3.1.시행)에 의한 ‘영아발달’을 이수한 경우 종전법에 의한 ‘아동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 사례 2 : 2013. 3.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개정법(2014.3.1.시행)에 의한 ‘아동음악’을 이수한 경우 종전법에 의한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 사례 3 : 2013. 3.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개정법(2014.3.1.시행)에 의한 ‘아동수학지도’를 이수한 경우 종전법에 의한 ‘아동수 · 과학지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14. 3. 1.시행)에 의한 자격기준 적용 대상자*가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변경 전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2014. 2. 28.까지 이수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정 기준**

* 2014. 3. 1. 이후 학점은행제 등(평생교육법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자

영역별	이수 교과목명(변경 전)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현행법)
보육기초 (필수)	아동발달	유아발달 또는 영아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영유아교육	아동수 · 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 적용 사례 1 : 2014.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로 2014. 2. 28.이전에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개정법에 의한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 사례 2 : 2014.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로 2014. 2. 28.이전에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한 경우 개정법에 의한 '아동음악' 또는 '아동음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 사례 3 : 2014.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로 2014. 2. 28.이전에 '아동수·과학지도'를 이수한 경우 개정법에 의한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2016.8.1. 시행)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등 (2016년 제3·4차, 2017년 제2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를 유지

영역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나.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가 개정기준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적용대상 :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① 2017.1.1.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② 2018.1.1. 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상 교과목 : 아동복지(론),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역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적용 사례 : 2016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한 사람, 또는 2017년에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아동복지(론)” 대신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 2017.1.1.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 및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 취득자부터는 개정된 교과목명으로 이수 필수. 교과목 명이 다른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따름

다.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의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 방법

- 적용대상 :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로 2014.1월 ~2016.12월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구분	인정기준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영아발달”, “유아발달” 2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발달 +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영유아발달 +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 적용 사례 1 : 2015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하여 “영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2016년에 휴학, 2017년에 복학하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3학점)” 이수 시 보육필수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 사례 2 : 2016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가 보육필수 영역에서 “아동복지(론)(3학점),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과정(3학점), 보육교사론(3학점)” 교과목을 이수하고 휴학, 2018년에 복학하여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1과목(3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할 경우 인정
→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개정 기준의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의 선택과목에서 이수해야 하는 4과목 12학점 외 “1과목(3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할 경우 인정

라. 개정기준(2016.8.1.) 대상자의 「영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

- 적용대상 :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① 2017.1.1. 이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②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인정기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 유아발달 이수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로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각 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 적용 사례 1 : 2017.3월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 완료한 경우,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 사례 2 : 2018.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6년에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완료 한 경우 →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마. 개정기준(2016.8.1. 시행) 대상자가 종전기준(2014.3.1. 시행)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적용대상 :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교과목 명
영유아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적용 사례 : 2018.1.1.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아동문학교육” 대신 “아동문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2014.3.1.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2014년 제2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14. 3. 1.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변경*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4,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편(재)입학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적용 기준 마련

***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편(재)입학생의 경우 동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육과정 이수, 학위취득 조건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재학 중인 학생과의 형평성, 개정 규정에 따른 교과목 이수를 위해 소요되는 학점 취득 기간 등을 고려하여 '14. 1. 1.전에 입학한 사람과 같은 학년으로 편(재)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2과목 35학점) 적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사항

1. 2020년 1학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985, 2020.5.1.(2급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986, 2020.5.1.(3급 교육과정)
2. 2020년 2학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223, 2020.8.24.
3. 2021년 1학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95, 2020.11.27.
4. 2021년 2학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482, 2021.4.29.
5. 2022년 1학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552, 2021.12.6.

가. 대면 교과목 운영 방법

- 대면 교과목(보육실습* 외 8개)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이 곤란할 경우 집중수업(총 수업시간 준수),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동시적 원격수업·동시적 원격시험)으로 대체운영도 인정

*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 2020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 등으로 대면 교과목 이수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 및 시험실시를 인정

* 상기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대학장 확인 서류 등)제출 필수

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 2022년 1학기
대면 교과목	• 집중수업 인정 • 동시적 원격 수업 인정 • 동시적 원격 시험 불인정	• 집중수업 인정 • <u>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동시적 원격 수업) 인정</u> • 동시적 원격시험 인정
	•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출석 수업·시험 제한	• <u>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 인정</u> *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보고방법

- 대면 교과목을 출석 확인이 가능한 동시적 원격수업, 동시적 원격시험으로 대체운영 시, 학기별 제출기한까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운영 조치결과 보고
- 집합수업, 집합시험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별도 보고 불필요
- 원격 대학의 경우, 공문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로 성적증명서 내 '대면' 표기 또는 '대면확인서류' 제출

나. 보육현장실습 운영 방법

- 보육현장실습은 총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6주 직접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2주는 간접실습 방식*으로 대체운영 가능

* 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 2020년도 2학기부터 실습 기간 내, 2회 이상 분할실습도 허용 가능

* 단, 자격증 신청 시, 2회 이상 분할실습에 대한 증빙자료(출근부, 분할사유 공문 등) 제출

- 2020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 등으로 보육현장 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실습 4주에 준하는 간접실습을 교육기관 자체 계획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함

* 상기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대학장 확인 서류 등) 제출 필수

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 2022년 1학기
보육실습	• 4주 직접실습 + 2주 간접실습 • 2회 분할실습 가능	• 4주 직접실습 + 2주 간접실습 • 2회 이상 분할실습 허용
	•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실습 제한	• <u>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직접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u> *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보고방법

- 보육현장실습을 4주 직접실습과 2주 간접실습으로 진행한 경우,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 간접실습확인서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 6주 240시간을 모두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간접실습확인서' 제출 불필요

3. 자격증 신청 관련 서식

1. 보육실습확인서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 름	생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기관종류	최초인가일	년 월 일
실습기관 인가 정원			
평가	평가상태		
정보	평가일	0000년 0월 0일	
주소	연락처		

* 어린이집은 운영형태(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 등) 기재,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운영 여부 기재

3. 실습 지도교사

이 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13. 3. 1. 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 등록 및 제출
○ 보육실습 내용 시스템 미등록자는 첨부서류①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②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방법〉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가. 보육실습 이수자의 기본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나. 양성교육기관명에는 재학 중인 대학 또는 교육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실습기관	2017. 1. 1.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는 어린이집 평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단, 2016.12월 말까지 보육실습 이수자는 평가 관련 사항 제외) 가. 실습기관명: 보육실습을 이수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명을 기재합니다. 나. 기관종류: 어린이집은 운영형태(민간, 가정, 직장, 국공립 등),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 운영 여부를 기재합니다. 다. 실습기관 인가 정원: 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실습기관의 인가받은 정원을 기재합니다. 라. 평가정보: 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실습기관의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중·재평가·미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음 마. 평가상태: (평가완료/평가중/재평가/미평가) 중 공표받은 결과를 기재합니다.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인 경우, '평가완료'로 표기합니다. (유치원은 해당하지 않음) 바. 평가일: 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실습기관이 받은 평가완료 일자를 기재합니다.(평가인증제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기재함) 사. 주소: 실습기관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아. 연락처: 실습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실습 지도교사	가. 2007년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부터는 실습 지도교사의 이름, 자격 종류(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중 택1), 자격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2013년 3월 1일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부터는 실습 지도교사가 동일한 실습 지도기간 내에 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하였는지 표시합니다. • 실습 지도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양식 사용 시,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 불필요
실습 기간	가. 총 시간: 1일 실습 시간에 실습 일수를 곱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예: 8시간(1일 실습 시간) × 30일(실습일수) = 240시간) 나.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의 시간을 입력합니다. ※ 실습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연속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결석당일의 진료확인서를 준비하여 자격증 신청 시 제출 필요 (실습기간 6주 240시간은 준수해야 함) ※ 실습 중 실습기관 방학 등으로 실습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어린이집 직인 필수)등'을 준비하여 자격증 신청시 제출 필요
직 인	보육실습확인서 1장에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별(대학, 보육교사교육원, 평생교육원) 학과장 직인 날인 방법 • 대학: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학과장 직인 날인 •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장 직인 날인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장 직인 날인

보육실습확인서 첨부서류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적용대상 :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출
 - 1) 2013. 3. 1.이후 보육실습 이수자
 -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내 보육실습 내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 3) 보육실습확인서 내 실습 지도교사가 1인당 3명 이내로 실습지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아래의 보육실습기간 동안 실습 지도교사 1명당 3명이내의 보육실습 지도 기준을 준수하여 실습을 지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성 명 : ○○○
2. 실습생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3. 실습기관 : ○○○ 어린이집(유치원)
4. 보육실습 기간 : 0000.00.00 ~ 0000.00.00
5.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실습 지도교사	실습생	양성교육기관
○○○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	○○○ 교육원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작성방법: 실습 지도교사가 동일한 보육실습 기간 내에 지도한 전체 실습생의 성명, 양성교육기관(학교 및 학과명, 교육원명)을 작성

2. 간접실습확인서

- 적용 대상자(2020년 1학기~2022년 1학기 내 실습 이수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사항으로 총 6주(240시간)의 보육현장실습 기간 중 2주를 간접실습 방식으로 대체 운영 가능하며 아래의 양식에 운영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간접실습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년 ○학기에 보육실습 6주 240시간 중 2주를 간접실습으로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성 명 : ○○○
2.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3. 양성교육기관 : ○○○대학교 ○○학과
4. 학번 :
5. 간접실습 내용

담당교수	간접실습기간	간접실습시간	간접실습방법
○○○	'21.0.00.~ 0.00.	○○시간	세부 운영방법 및 내용 기재

년 월 일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간접실습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대체운영 가능(양성기관 내에서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 방식으로 운영)

※ 2주 간접실습 이수 시, 4주 직접실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 6주 240시간 동안 직접실습을 이수한 자는 '보육실습확인서'만 제출

3. 대면교과목 이수확인서

- 적용 대상자 : 성적증명서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의 2. 대면교과목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자격증 신청자(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개정, 2016.8.1.시행)

대면교과목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번 :
○ 전공학과명 :
○ 대면 교과목(명) 확인내역

구분	법령교과목	이수교과목	이수년도	대면교과목 이수 여부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예) 보육교사론		(예) 이수
	아동권리와 복지			(예) 미이수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예)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른 '대면 교과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상기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4. 유사교과목 확인서

- 법령교과목과 일치하지 않으나 보육 관련 교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 교과목 심의 요청 공문 및 유사교과목 확인서, 이수연도·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와 함께 제출

유사교과목 확인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학 번 :
4. 학 과 명 :
5.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법령교과목	유사교과목명 (이수한 교과목명) *이수한 학기 표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위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법령교과목에 해당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

발	행	일	2025년 8월
발	행	처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 이 책을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



교육부